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량 대상 무기체계의 선정,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방산물자 생산 및 관리)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.
- ②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폐기신청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

☐ 생산

☐ 개조·개발

접수번호	접수일시
------	------

신청인	상호·기관 명칭(회사 또는 부서명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
장비명	생산 신청수량	목적	생산 예정시기	보유장소

「방위사업법」 제4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생산(개조·개발 생산) 및 보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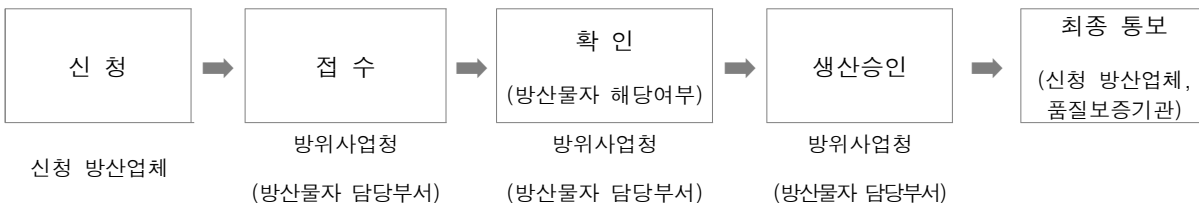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방산물자 생산·개조·개발 및 보유 계획서(아래사항 필수 포함) 가. 총 생산수량 및 수량별 생산목적(상세) 나. 생산 추진일정 및 작업공정계획 다. 보유 및 관리계획 라. 방산기술보호 대책 등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방산물자 폐기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
------	------

신청인	상호·기관 명칭(회사 또는 부서명)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
장비명	現 보유 수량	폐기 건의수량	잔여 수량	비고

「방위사업법」 제4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폐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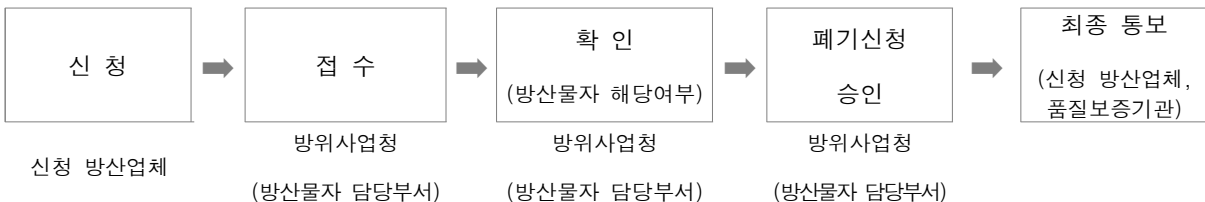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폐기처분 세부 사유서 2. 폐기처분방안 및 세부 절차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성능개량) ①~③ (생 략)	제19조(성능개량) ①~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량 대상 무기체계의 선정, 추진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 사업청장이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3조의2(방산물자 생산 및 관리)</u> <u>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 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②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방산 물자 폐기신청서는 별지 제28 호 서식에 따른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13